

의안번호	2206776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5.01.08.
추 계 번호	24C61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특수학교 1개교당 1명씩 언어재활사를 배치(시나리오1)하거나, 순회언어재활사를 시·도별 특수학교 3개교당 1인씩 배치(시나리오2)하기 위한 인건비를 추계할 경우, 2026~2030년 5년간 시나리오1의 경우 총 296억 1,000만원(연평균 59억 2,200만원), 시나리오2의 경우 총 105억 2,400만원(연평균 21억 4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언어재활사의 배치 (안 제59조의2)	시나리오1	5,491	5,698	5,913	6,136	6,372	29,610	5,922
	시나리오2	1,952	2,025	2,102	2,181	2,265	10,524	2,105

주: 1) (시나리오1) 국·공·사립 특수학교에 기배치되어 있는 언어재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1개교당 1명 이상 언어재활사를 배치할 수 있는 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에 인력 166명이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2) (시나리오2) 시나리오1에 따라 도출된 필요 인원수를 3개교당 1명의 순회언어재활사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총 59명이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3) 언어재활사는 교육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2026년에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2 (언어재활사의 배치)	(제1항) 특수학교에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둘 이상의 인근 특수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언어재활교육을 담당할 순회언어재활사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언어재활사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2 (언어재활사의 배치)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특수학교 1개교당 언어재활사 1명을 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시·도의 특수학교 3개교당 1명의 언어재활사를 순회언어재활사로 신규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 2)를 가정하여 추계

○ 개정안 시행후 언어재활사의 배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것이나, 본 추계서에서는 모든 특수학교에 1명(이상)의 언어재활사를 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3개교당 1명의 언어재활사를 배치하는 경우(시나리오 2)를 나누어 추계함

- (시나리오1) 국·공·사립 특수학교¹⁾에 기배치되어 있는 언어재활사 인원수²⁾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1개교당 1명 이상 언어재활사를 배치할 수 있는 교육청³⁾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에 필요인력인 166명(=180개 특수학교⁴⁾-14명 언어재활사 기배치⁵⁾)의 언어재활사가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⁶⁾⁷⁾
- (시나리오2) 시나리오1에 따라 도출된 필요 인원수를 3개교당 1명의 순회언어재활사로 배치하는 것⁸⁾으로하여 총 59명이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1) 국립학교의 경우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

2) 운영과정에서 '언어치료사' 또는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을 고려하여 '언어치료사'도 언어재활사와 동일한 제도로 간주함

3) 경남 11개 특수학교·25명의 언어재활사 운용, 울산 4개 특수학교·4명의 언어재활사 운용(자료: 교육청)

4) 전국 특수학교 수 195개교에서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특수학교 15개교를 차감한 숫자임

5) 43명의 기배치 언어재활사 인원수에서 경상남도과 울산광역시의 언어재활사 29명을 차감한 인원수임 (자료: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6) 방과후강사로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방과후강사가 아닌 교육공무직으로서의 언어재활사를 가정

7) 개정안 시행 후 경상남도과 울산광역시에는 신규 채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며, 기존 1개교당 배치 인원을 유지할 경우 추가제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8)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등 소속으로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해당 인원과 별개로 '특수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언어재활교육을 담당하는 순회언어재활사를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2024년 기준 특수학교 수와 언어재활사 인원수⁹⁾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언어재활사는 2026년에 일괄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로 (순회)언어재활사의 인건비를 추계하며, 인건비 단가는 2024년 서울농학교 교육공무직 언어재활사의 연봉과 수당을 준용하되, 추계기간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 외 부대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설립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언어재활사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¹⁰⁾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언어재활사를 특수학교 1개교당 1인씩 배치(시나리오1)하거나, 순회언어재활사를 시·도별로 특수학교 3개교당 1인씩 배치(시나리오2)하기 위한 인건비를 추계할 경우, 2026~2030년 5년간 시나리오1의 경우 총 296억 981만원(연평균 59억 2,200만원), 시나리오2의 경우 총 105억 2,400만원(연평균 21억 4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시나리오1의 경우 166명, 시나리오2의 경우 59명의 교육공무직 (순회)언어재활사가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 언어재활사 인건비 단가는 서울농학교(국립) 교육공무직 언어재활사의 연봉과 수당을 준용
 - 2024년 기준 연봉 26,232천원(=월 2,186천원×12월)과 수당 4,500천원¹¹⁾(급식비 150천원/월, 명절휴가비 연 1,700천원, 정기상여금 연 1,000천원)¹²⁾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9) 특수학교수는 2024년 교육통계를 참조하였으며, 언어재활사 인원수는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참조함

10)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함

11) 개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비용 등은 제외

12) 2024년 서울농학교 교육공무직 언어재활사 기준(자료: 서울특별시 교육청)

[표 2] 개정안에 따른 언어재활사 신규 채용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채용 인원 (A)	시나리오1	166	—	—	—	—	—	166
	시나리오2	59	—	—	—	—	—	59
인건비 단가(B)		33.1	34.3	35.6	36.7	38.4	—	35.7
합 계 (A×B)	시나리오1	5,491	5,698	5,913	6,136	6,372	29,610	5,922
	시나리오2	1,952	2,025	2,102	2,181	2,265	10,524	2,105

주: 1) (시나리오1) 국·공·사립 특수학교에 기배치되어 있는 언어재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1개교당 1명 이상 언어재활사를 배치할 수 있는 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에 인력 166명이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2) (시나리오2) 시나리오1에 따라 도출된 필요 인원수를 3개교당 1명의 순회언어재활사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총 59명이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3) 언어재활사는 교육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2026년에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실제 (순회)언어재활사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